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2년 3월 6일

○ 회부일자 : 2002년 3월 7일

3.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여성정책관실 】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위원의 감독” 등 기존 시도 사무가 시군 사무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

【 기업지원과 】

-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조항의 근거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기존 시도 사무였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가 시군 사무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
- 대풍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설립으로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위탁하기 위해 관련조문 삭제.

【 환경 과 】

-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기존 시도 사무가 시군 사무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신규 현지성사무를 시군에 위임함.

【 보건위생과 】

-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이 폐지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폐지된 사무를 위임조항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조항 정비.

【 물 관 리 과 】

- 먹는물관리법 개정으로 기존 시도 사무였던 “먹는 물 공동시설의 지정·관리 및 필요조치” 사무가 시군 사무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

【 농산지원과 】

- 비료관리법, 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된 “비료판매업의 등록” 등의 사무를 위임조항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조항 정비.

【 축 산 과 】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및 내수면어업법 전문 개정으로 기존에 시도 사무였던 “내수면 어업의 면허” 등의 사무가 시군 사무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조항 정비.

【 문화예술과 】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기존 시도 사무였던 “출판사 및 인쇄소 관리에 관한 사무”가 시군 사무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공연법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폐지된 사무를 위임조항에서 삭제.

【 지역개발과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및 도시개발법 제정에 따라 관련조문이 폐지된 사무를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일부 “도시개발사업” 등의 현지성 사무를 위임조항에 추가함.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으로 기존 시도 사무가 시군 사무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

5. 검토의견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관련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위임사무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여성정책관실 소관 아동복지법 개정(법률 제6151호, 2000.1.12)에 따른 아동위원의 감독 등 아동복지 관련업무,

기업지원과 소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법률 제6420호, 2001.2.3)으로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환경과 소관 토양환경보전법 개정(법률 제6452호, 2001.3.28)에 따른 토양오염유발시설관련 신고 및 시정명령 등의 업무,

물관리과 소관 먹는물관리법의 개정(법률 제6103호, 2000.1.7)으로 먹는물 공동시설의 지정관리 및 필요조치 업무,

축산과 소관 내수면어업법 개정(법률 제6255호, 2000.1.28)에 따른 내수면어업의 면허 등 관련업무,

문화예술과 소관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개정(법률 제5659호, 1999.1.21)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소관리에 관한 업무,

지역개발과 소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법률 제6490호, 2001.7.24)에 따른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은

⇒ 시·군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위임규정에서 삭제하고,

- **기업지원과** 소관 대풍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충청북도공고 제2001-221호, 2001. 6. 15)에 따른 대풍지방산업단지 관리업무,

보건위생과 소관 마약법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폐지(법률 제6146호, 2000.1.12) 및 적출물처리규칙의 폐지(보건복지부령 제170호, 2000.8.18)에 따른 향정신성 의약품관련업무, 적출물처리 관련업무,

농산지원과 소관 비료관리법 및 농약관리법 개정(법률 제5019호-'95.12.6, 법률 제5153호-'96.8.8, 법률 제5453호-'97.12.3, 법률 제5947호-'99.3.31)에 따른 비료판매업 관련업무와 방제업등록 관련업무,

문화예술과 소관 공연법 개정(법률 제5924호, 1999.2.8)에 따른 공연자 등록·관리에 관한 업무,

지역개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 제6252호, 2000.1.28)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업무 등은,

⇒ 근거 규정의 폐지에 따라 위임규정에서 삭제하고,

- 기업지원과 소관 전기사업자 관련업무,
환경과 소관 토양오염 행정조치 관련업무,
보건위생과 소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제정(법률 제6146호, 2000.1.12)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등 관련업무,
농산지원과 소관 방제비용 부담통지서의 교부업무 및 농약판매업 등록·농약관리 관련업무,
축산과 소관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 등은
- 근거규정의 개정 및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위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다만,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별표1 권한위임 사무 중,

○ 보건위생과 소관 제16호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권한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은 마약류 취급자 및 관리자의 허가 지정함에 있어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 보건 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가권한의 위임만으로도 동조에 의한 허가 등의 제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허가 또는 지정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품목에 관한 사항을 미리 지정 공고하여야 함으로 지정공고 사항은 위임이 가능하단 것이나,

특정지역 또는 특정품목에 관한 사항의 지정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동 조항은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지역개발과 소관 옥외광고물관리예관한사항 제7호 나목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지정을 시·군에 위임하고 있는 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중, 제6호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 장소 등과 관련하여 공중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2조에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을 정하고 있으므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별표1 지역개발과 소관 옥외광고물관리에관한사항 제7호 나목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